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대비표 및 시행규칙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2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4. 12. 31.>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제80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5.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2. 3.>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다만,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정산일 후의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신설 2015. 2. 3., 2024. 2. 29.> ④ 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3., 2020. 2. 11., 2024. 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23호, 2024. 12. 31.,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개정 2014. 12. 23.> $\text{퇴직소득} = \text{공제금} - \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text{기타소득} = \text{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삭제<2016. 12. 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29.>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⑤ 법 제86조의3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5. 2. 3., 2023. 2. 28.> 1. 천재·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23호, 2024. 12. 31., 일부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6. 12. 20.>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⑥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5. 2. 3.>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2. 3.> ⑧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5. 2. 3.> ⑨ 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개정 2015. 2. 3.> ⑩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5. 2. 3.> [본조신설 2007. 8.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령 제322호, 2013.2.23., 일부개정]

제61조(서식 등) ① 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9. 5. 24., 1999. 9. 30., 2000. 3. 30., 2001. 3. 28., 2001. 9. 29., 2002. 3. 30., 2003. 3. 24., 2004. 3. 6., 2004. 10. 16., 2005. 3. 11., 2005. 12. 31., 2006. 4. 17., 2007. 3. 30., 2007. 11. 23., 2008. 4. 29., 2008. 4. 30., 2008. 10. 15., 2009. 4. 7., 2009. 8. 28., 2010. 4. 20., 2010. 6. 8., 2010. 6. 30., 2011. 4. 7., 2011. 8. 3., 2012. 2. 28., 2012. 10. 15., 2013. 2. 23., 2013. 5. 14., 2013. 10. 21., 2013. 12. 30., 2014. 2. 28., 2014. 3. 14., 2014. 7. 4., 2015. 3. 13., 2016. 2. 25., 2016. 3. 14., 2016. 8. 9., 2017. 3. 10., 2017. 3. 17., 2018. 1. 9.,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0. 4. 21., 2020. 6. 15., 2021. 3. 16., 2021. 5. 13., 2021. 11. 9., 2022. 3. 18., 2023. 3. 20., 2024. 3. 22., 2024. 12. 31.>

1~59의2. 생 략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8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5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11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영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4서식

59의5~95. 생 략

②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4. 11. 15.>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2항	벤처기업투자신탁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조합·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2항	특정사회복지시설 집합투자지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4항	투융자집합투자지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8항	개인연금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항	연금저축		()사망 ()천재·지변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8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천재·지변 ()해외이주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장기주택마련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제5항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제10항	세금우대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제5항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8항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9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5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9항	청년희망저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쪽 중 제3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의8제7항	청년도약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의 혼인,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2항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5. 폐업: 폐업증명원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 <개정 2019. 3. 20.>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대 상 기 간	공제부금납입방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납 [] 분기납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월별	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월별	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 용 목 적		공 제 부 금 소 득 공 제 신 청 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